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9. 4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96. 9. 4
- 다. 상정일자 : '96. 9. 17 (제4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자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 나. 제안사유
 - 지속되는 유입인구의 수용과 저렴한 택지공급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택지개발 등 기타공영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정코자 함.
- 다.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관계규정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 규정
 - 공영개발사업의 범위(안 제2조)
 - .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 .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 . 기타 경영수익사업
 - 공영개발사업 관리자 지정(제3조)
 - . 공영개발사업 관리자 : 부군수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안 제7조)
 - . 공영개발사업을 사업별로 특별회계 설치 운영
 - 지방채 발행(안 제12조)
 -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군수 명의로 지방채 발행

○ 자문기구의 설치

- 공영개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공영 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 사업의 위탁(안 제23조)

- 군수는 공영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 추진을 타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재휴)

- 동 조례제정안은 날로 유입되는 인구의 수용과 저렴한 택지공급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택지개발 등 기타 공영개발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및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 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 생 략 "

7. 첨부 :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6. 9.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는 지역개발로 증가한 인구의 수용과 저렴한 우량 택지공급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택지개발 등 기타 공영사업을 원활히 추진키 위함.

2. 개정근거

지방공기업법 제5조

3. 주요내용

- 목적 (조례안 제1조)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

- 사업의 범위 (조례안 제2조)

- . 택지조성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 공단조성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 기타 경영수익 사업

-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7조)

- .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함.

- 지방채 발행 (조례안 제12조)

-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

- 자문기관의 설치 (조례안 제22조)

- . 공영개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구성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3조 (관리자의 지정)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제4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어야 한다.

제5조 (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어야 한다.

제6조 (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9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 (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으로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 (수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을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매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쳐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공영개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3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